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22

발의연월일: 2020. 8. 18.

발 의 자 : 윤미향・아주진(비)・용혜인

윤준병 • 양이원영 • 정성호

고용진 · 장철민 · 유동수

송옥주·이소영·김경만

강선우 · 남인순 · 임종성

이워욱 • 이타희 • 안호영

정취숙 • 이학영 의원

(20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도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지급을 국가가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 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에서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급여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체당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급여가 체당금의 지급 범위에서 종종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이와 관련된 명시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사업주가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임금등을 지급

하지 못한 경우 사업주의 신청에 의해서만 체불 임금등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가 필요한생계비를 적기에 지원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더불어,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계좌로 지급받은 후 금액에 대한 보호규정은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임금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사업주 외에 근로자도 생계비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체당금을 지급받은 계좌의 예금에 관한 보호 규정도 신설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안 제7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2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임금"을 "임금(「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7조의2의 제목 중 "임금등의 사업주 융자"를 "임금등 및 생계비 융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체불 임금등 비용"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생계비 충당에 필요한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체당금을 지급받은 계좌의 예금 중 체당금에 해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없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의2제1항"을 각각 "제7조의2"로 한다.

제19조제3호 중 "임금등 지급을 위한 사업주"를 "임금등 지급 및 생계비 충당을 위한"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임금등의 사업주"를 "임금등 지급 및 생계비 충당을 위한"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	2
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	
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替當	
金)"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의 상	
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	
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1
제1호에 따른 <u>임금</u> 및 「근로	임금(「근로기
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u>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u>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를
퇴직급여등	<u> 포함한다)</u>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제7조의2(체불 임금등의 사업주 융자) ① (생략) <신 설>

-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근로자 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③ 체불 임금등 비용 융자의 구체적인 기준, 금액, 기간 및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략)

<신 설>

②·③ (생 략)

(3	~	7	(ह्	현행.	과	같	음)			
제'	7조	의;	2(え	불	임	급.	등	및	생	계	ㅂ]
-	융기	<u>(</u>	1	(현] 행 :	과	같-	음)			
(2	고	용길	ᆫ동	부기	상 곤	1은	入	납	주	로
-	부터	=	임	금등	을	ス]급	받기	۲]	못	한
-	근	己ス] 의)	생활	안	정{	<u>)</u> =	위	하	여
-	근	呈ス	l 의	신	청	케	따	라	생	계	ㅂ]
·	충덕	당어] :	필요	.한	日	용	을	융	자	할
\$ _	수	있	<u>다.</u>								
(3	제	1항	및	저	2 ^ह	<u></u>				
-											
-											
-											
(4	제	1항	및	제	2호	· 카에	u	른		
-											
-											
-											
		,									

- 제11조(수급권의 보호) ① (생 제11조(수급권의 보호) ① (현행 과 같음)
 - ② 체당금을 지급받은 계좌의 예금 중 체당금에 해당하는 액 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③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 과 같음)

-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① 고용 지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 및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체당금 또는 융자금을 받으려 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체당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또는 융자하지 아니할 수있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및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체당금 또는 융자금을 이미 받은 자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체당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1. · 2. (생략)
 - ③・④ (생 략)
- 제1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저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1. 2. (생략)
 - 3. 제7조의2에 따른 체불 <u>임금</u> 등 지급을 위한 사업주 융자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①
제7조의2
②
- <u>제7조의2</u>
1. • 2.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19조(기금의 용도)
1. • 2. (현행과 같음)
3임금
등 지급 및 생계비 충당을 위
<u>한</u>

4. ~ 8. (생략)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 조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지급, 제7조의2에 따른 체불 임 금등의 사업주 융자, 제8조에 따른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 의 대위, 제14조에 따른 부당이 득의 환수 등 이 법에 따른 업 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이하 "자료제공등"이라 한 다)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 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 료제공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 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 11. (생략)

②·③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세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
조요청) ①
<u>임</u>
금등 지급 및 생계비 충당을 위
<u>한</u>
<u>.</u>
1. ~ 11.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